

의안번호	제606호
의결 연월일	2014년 1월 24일 (제326회)

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4년 1월 8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

#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06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4년 1월 8일  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「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」 제정(2013.12.12.)에 따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제부지사의 임용 자격기준을 정비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경제부지사 자격기준 중 근무상한연령 삭제 (안 제2조)
  - 부적격자 기준 중 「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'근무상한연령 초과자' 삭제

## 3. 의안전문 : 붙임

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## 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## 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와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을 초과한 자”를 “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자격기준) 부지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<u>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와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을 초과한 자</u>는 부지사로서 임용될 수 없다.</p> <p>1. 2급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                 2.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이상 재직한 자                  3.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.군수.구청장으로 4년이상 재직한 자                  4. 기타 지방행정 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</p>	<p>제2조(자격기준) -----                  -----, -----                  ----- <u>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</u>                 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2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3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4. (현행과 같음)</p>

# 관계 법령 발췌

## □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(2013.12.12. 시행)

**제1조(목적)** 이 영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,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「지방공무원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3항제2호의 별정직공무원(이하 "지방별정직공무원"이라 한다)의 임용, 복무 및 능률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8조(근무상한연령)** 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. 다만, 정무부시장, 정무부지사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의 근무상한연령은 두지 아니한다.

② 지방별정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.